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해석 의원)

의안 번호	22-139
----------	--------

발의년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상원,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최은하, 한선미, 홍지광

1. 개정이유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자금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상품권의 구매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보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관리 현황 공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 3조의2)

나. 이자수익 처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다. 상품권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조항 신설(안 제 7조의2)

3.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및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4. 조 례 안 : 불임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불임

나. 입법예고: 2022. 11. 18. ~ 11.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3조의3 및 제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재정으로 귀속한다.

제7조의2(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3조의2(마포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 운영 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u></p> <p>제3조의3(이자수익 등의 처리)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구의 재정으로 귀속한다.</p> <p>제7조의2(구청장의 책무) ① <u>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발전과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상품권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u>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p>

【관 계 법 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49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민선복
연 락 처	02-3153-8572